

##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

제출년월일 : 1993. 7. 12.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기능이 감소된 치산사업소를 폐지하여 임업시험장에 통합하기 위하여
- 기존의 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기구인 '산림환경연구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로 하고
- 사업소의 기능을 당초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기능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
- 조문중에 '시험장장'을 '연구소장'으로, '장무'를 '소무' 등으로 변경된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 부칙에서 '치산사업소조례'를 동시폐지하는 것임.

###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별첨)
- 지방자치법시행령 (별첨)
- 내무부 지침 (별첨)

##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설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치산사업 시행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내지 제3조(기관의 병설) 중 “시험장”을 “연구소”로 하고

제4조(업무)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중앙임업시험장과의 지역적 연락시험
3.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4.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설의 보호관리
5. 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
6. 임도시설의 설계.시공 및 산사태 예방복구
7. 기타 임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장장, 병원장, 학교장)”을 “제5조(소장, 병원장, 학교장)”으로 하고 제1항중 “시험장”을 “연구소”로, 제2항 및 제3항중 “장장”을 “소장”으로, “장무”를 “소무”로 한다.

제6조(정원 및 출장소) 내지 제13조(공시종자의 봉함)와 제15조(수수료의 면제) 중 “시험장”을 “연구소”로, “시험장장”을 “연구소장”으로, “장장”을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중 “임업시험장장” 을 “산림환경연구소장” 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u>충청북도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u></p> <p>제1조 (설치)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임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을 둔다.</p> <p>제2조 (위치) <u>시험장은</u> 청주시 용암동에 둔다.</p> <p>제3조 (기관의 병설) 시험장내에 산림피해 발생예찰 방역 및 상담을 위한 산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 (업무) ① <u>시험장은</u>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li> <li>2. 중앙임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li> <li>3. 우량묘목의 생산</li> <li>4. <u>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신설)</li> <li>(신설)</li> </ul> </li> <li>5. 기타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생약)</li> </ol> <p>③ 학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생약)</li> </ol> <p>제5조 (장장, 병원장, 학교장) ① <u>시험장에</u> 장장을 두며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p> <p>②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u>장무</u>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병원장 및 학교장은 <u>장장이</u> 겸임한다.</p> <p>제6조 (정원 및 출장소) ① <u>시험장에</u>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병원, 학교에는 별도 공무원을 두지 않고 <u>시험장</u> 공무원이 겸임한다.</p> <p>③ (생약)</p> <p>제7조 (전문연구원 및 강사) ① 도지사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기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장에 약간명의 산림관계 전문연구원과 강사를 둘 수 있다.</p> <p>② (생약)</p>	<p><u>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 (설치)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치산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 (위치) <u>연구소는</u> -----</p> <p>제3조 (기관의 병설) <u>연구소내에</u> ----- ----- -----</p> <p>제4조(업무) ① <u>연구소는</u>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u>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u></li> <li>4. <u>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및 시설의 보호관리</u></li> <li>5. <u>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u></li> <li>6. <u>임도시설의 설계, 시공 및 산사태 예방복구</u></li> <li>7. -----</li> </ol> <p>② ----- 1~3. (현행과 같음)</p> <p>③ ----- 1~2. (현행과 같음)</p> <p>제5조 (<u>소장, 병원장, 학교장</u>) ① <u>연구소에</u> 소장을 두며 ----- --- ② <u>소장은</u> ----- 소무를 ----- ③ ----- 소장이 -----</p> <p>제6조 (정원 및 출장소) ① <u>연구소에</u> ----- ② ----- 연구소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 (전문연구원 및 강사) ① ----- ----- 연구소에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제8조 (시험 및 감정위탁등) ① 시험장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위탁자' 라 한다)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시험장장(이하 '장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험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 (시험 및 감정위탁등) ① 연구소에 ----- ----- ----- ----- 연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 ----- ② ----- 소장이 ----- -----</p>
<p>제9조 (수탁의 거부) ① 장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위탁서를 받았을 때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통고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제9조 (수탁의 거부) ① 소장은 ----- ----- ----- ----- ② ----- 소장은 ----- -----</p>
<p>제10조 (기구등의 제공) 장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 기구, 재료, 노무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 (기구등의 제공) 소장은 ----- ----- -----</p>
<p>제11조 (시험성적서) 장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 (시험성적서) 소장은 ----- ----- -----</p>
<p>제12조 (광고의 기재등) ① (생 략) ② 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게시, 기타의 기재사항은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 (광고의 기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 -----</p>
<p>제13조 (공시종자의 봉함) ① 장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 봉함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3조 (공시종자의 봉함) ① 소장은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수수료) ①~② (생 략)</p>	<p>제14조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수수료의 면제) 장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5조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 -----</p>
<p>제16조 (시행규칙) (생 략)</p>	<p>제16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  <u>치산사업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u></p>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생 략)	(현행과 같음)
임업시험위탁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19 신 청 인 (인)	----- ----- -----
임업시험장장 귀하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생 략)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생 략)	(현행과 같음)
19 임업시험장장 (인)	산림환경연구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신 청 인 (인) 임업시험장장 귀하	(현행과 같음) -----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생 략)	(현행과 같음)